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소득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	------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 소득금액	근로소득 유·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무
		[]유 []무	[]유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해당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한 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의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만 있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종교인소득자용」을 모두 적습니다.
-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적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증명신청일이 7월 31일 이전인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고,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소득금액부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